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12호

시행일자 2020. 4. 28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78호(2020.4.28.)
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398(2020.4.28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61호(2020.3.20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
○ 별표1 중 별지1 신설, 별지 2,3,4 변경, 별지 5,6 삭제

○ 시행일 : 2020. 5. 1.(품목별 상이)

붙임 : 고시개정문 및 목록표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